

# 서 면 질 문 서

=====

질문의원명	고 병 국	소속위원회	도시계획관리
질문대상자	서울특별시장		
질문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보상 관련		

<질문내용>

1)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중 보상 대상지로 결정한 필지가,

- ① 유허가 건축물 존재해 온 도시계획선 경계부 위치
- ② 단기/중장기적으로 공원조성계획 없음
- ③ 해당지의 특성상 공원 조성 필요성 없음
- ④ 급경사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없음
- ⑤ 토지주(건물주)는 보상을 희망하지 않음
- ⑥ 토지주(건물주)는 공원해제를 요구하지 않음
- ⑦ 토지보상에 서울시 예산 수십억 원이 소요 예상

위 모든 조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도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상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조건이 동시에 모두 해당이 될 경우, 도지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의 정책목표도 달성하고, 불필요한 민원제기도 차단하며, 막대한 예산낭비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법 제11조 5항(구 건축법 제8조)에 의해 1996년 1월 6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대지면적 포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에 대해, 가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한 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3)의 해당 건축물(대지면적 포함)이 실효 대상이 아닐 경우 “구 건축법” 개정(시행 1996.1.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대지 포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에 대해 가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한 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